

무배당 아이사랑 첫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아이사랑 첫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

구분	명칭	종류		
주보험	무배당 아이사랑 첫보험	1종	순수보장형	태아형
				어린이형
		2종	50%만기환급형	태아형
				어린이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순수보장형	30	세	10	년	0	15	0	15
순수보장형	30	세	15	년	0	15	0	15
순수보장형	30	세	20	년	0	10	0	10
순수보장형	40	세	10	년	0	15	0	15
순수보장형	40	세	15	년	0	15	0	15
순수보장형	40	세	20	년	0	15	0	15
50%만기환급형	40	세	10	년	0	14	0	14
50%만기환급형	40	세	15	년	0	12	0	12
50%만기환급형	40	세	20	년	0	10	0	10

*상기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이하, '태아보장기간' 이라 한다)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아래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추가로 부가한다.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태아형	1개월~10개월	전기납	0세(태아)	0세(태아)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태아를 가입대상으로 한 계약의 경우, 출생전후기의 특정병태로 인한 수술과 입원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무배당주산기수술특약 및 무배당주산기입원특약을 의무부가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하지 않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선납에 대해서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 로 계산한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동될 수 있다.

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에 따른 확정기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험료 선납이 제한된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평균공시이율+1%』 이내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13. 예약가입대상특약의 처리에 관한 사항 (“태아형” 에 한함)

가. 회사는 이 보험을 태아로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 가입 시 아래에 정한 특약(이하, ‘예약가입대상특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출생일 이전에 미리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예약가입대상특약	피보험자	특약의 보장개시일
무배당 보호자정기특약	주계약의 피보험자인 태아를 임신한 임신부	주계약 피보험자(태아의)의 출생일

나. 계약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해당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출생예정일 이후에도 출생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출생통지에 따르는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출생예정일을 출생일로 한다.

라. 주계약 계약체결 시의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정산한다.

마. 회사는 예약가입대상특약의 보장개시일 15일 전까지 보장개시 대상 약관 및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해당 특약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별

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된다.

바. 계약자는 예약가입대상특약의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특약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14. 기타

가. 태아가입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 체결시점에 주계약 및 이 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의 피보험자(또는 주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인 경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태아가입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단, 피보험자(또는 주피보험자)가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임신한 임신부’ 인 특약에는 태아가입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적용하며, 이 때 보험료는 피보험자 남자 기준인 보험료를 적용한다.
- (3) 출생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기준(피보험자 남자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이때 보험료는 계약체결 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 (4) ‘(2)’ 또는 ‘(3)’ 에도 불구하고 출생한 피보험자의 성별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시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 (5) ‘(4)’ 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6) ‘(5)’ 에 따른 금액은 ‘(4)’ 에 따라 계산된 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7) ‘(4)’ 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에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8)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 (9) 회사는 ‘(3)’ 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출생예정일이 도래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

나. 기초율 변경시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다.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1)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정보조 회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 제공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2)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진다.

(3) 본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다만,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마.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한다.

바.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